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기관 인증기준 장애인 의료접근성 추가〉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435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2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6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20.

(3) 회 부 일 : 2026. 4.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사후 성과 등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의료 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 ⑤ (생략)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u> ② ~ ⑤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적용례: 제58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부터 적용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58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58조의3에서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¹⁾

1) 「의료법」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현행 인증기준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인증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표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률²⁾이 1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장애인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임.³⁾

- 또한,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연평균 의료이용일수는 비장애인보다 높은 수준임.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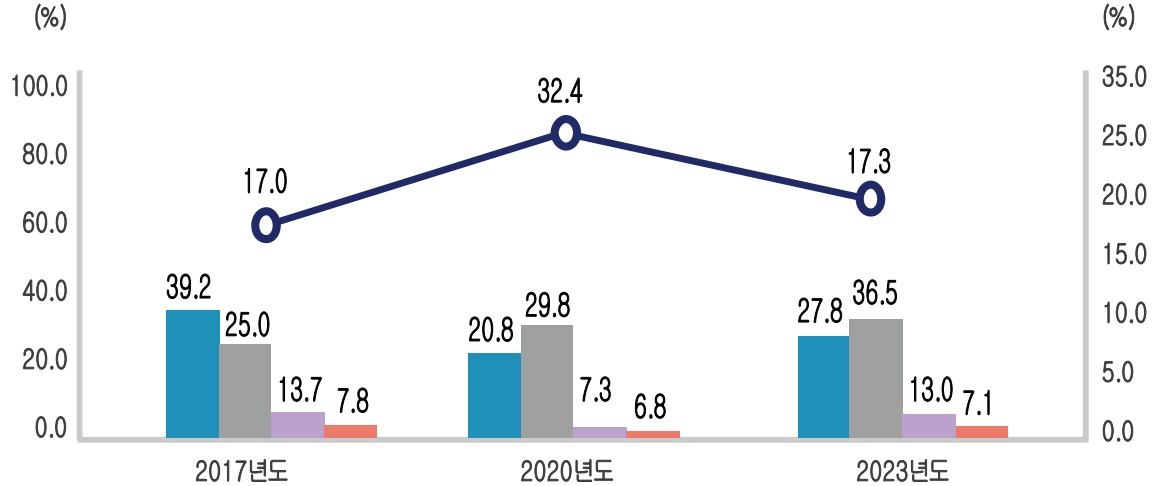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률

3) 최경화. ‘한국 장애인 미충족 의료 현황’, 보건사회연구, 2021;41(3):160-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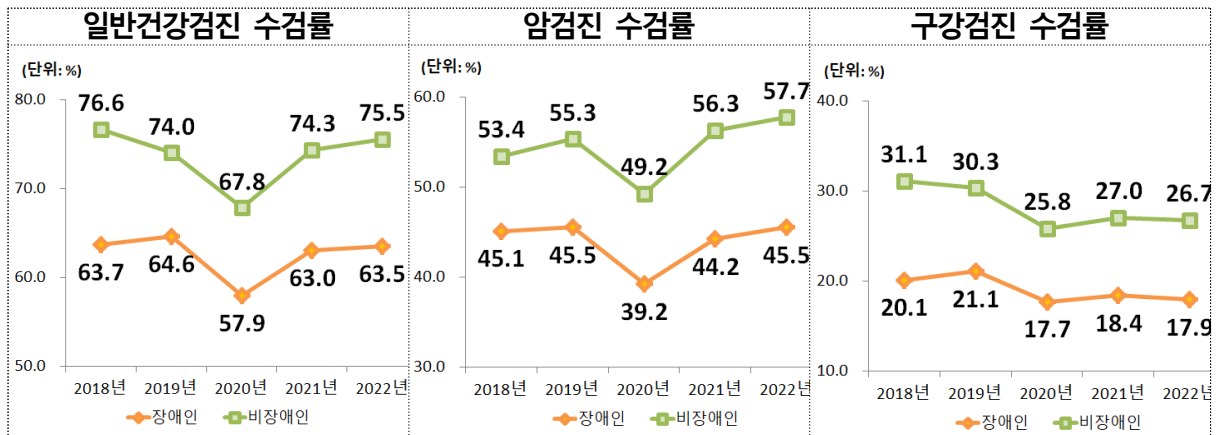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및 주된 이유

연도별 미충족 의료율 경제적 이유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시간이 없어서 의료기관 방문시 동행 할 사람이 없어서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비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



자료: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주요 결과

2022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의료이용 (일수)



자료: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주요 결과

□ 다만, 현행법 제58조의3제1항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의 분류 체계상 포괄적인 상위 개념을 명시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의료접근성과 같이 구체적인 하위 개념은 제1호 ‘환자의 권리와 안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를 별도의 호로 명시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참고로, 현행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Ver. 5.1 조사항목은 4개 영역(Domain), 13개 장(Chapter), 92개 기준(Standard), 523개(병원 517개) 조사항목(Measurable Element, M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에 명시된 항목들은 조사항목의 장(Chapter)에 해당하거나, 다수의 인증기준을 아우르는 범주인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 현재 장애인 관련 항목은 II. ‘환자진료체계’ 영역, 6장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에 해당하는 7개 기준 중 ‘6.2 취약환자 권리보호’ 기준의 5개 항목 중 3개로 구성되어 있음.

< 급성기병원 인증기준(ver. 5.1) 中 ‘제6장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

6.2 취약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한다.

조사항목	구분	상급	종합	병원
1 취약환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다.	S	정규	정규	정규
2 학대 및 폭력피해자 발생 시 보고 및 지원체계를 준수한다.	P	정규	정규	정규
3 신생아와 소아환자의 유괴예방 절차를 준수한다.	P	정규	정규	정규
4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지원한다.	P	정규	정규	정규
5 장애인환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직원은 이를 알고 있다.	P	정규	정규	정규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수용)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강화라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은 이미 현행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의 세부 항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

2) 대한의사협회 (반대)

-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의 내용과 범위가 매우 포괄적·추상적이어서 구체적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형식적 항목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이 병행되어야 함.

3) 대한치과의사협회 (반대)

-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를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명시하는 것은 개별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음. 강제적 인증기준 도입보다는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유도하는 방식의 점진적인 제도개선이 바람직함.

4) 대한병원협회 (반대)

-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 항목은 이미 같은 조 제1항제1호(환자의 권리와

안전)에 따라 인증조사 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규정에 따른 실익이 미미함.

5) 대한요양병원협회 (반대)

-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요양병원의 경우 의무인증 대상 의료기관으로, 인증기준을 항목을 확대할 경우 사실상 강제적 규제 강화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접근성 관련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통해 일정 부분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항목 도입 시 현장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4

장(Chapter)		기준(Standard)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계	필수	정규	사범	계	필수	정규	사범	계	필수	정규	사범
13		92		523	53	467	3	523	52	462	9	517	52	415	50
I. 기본가치체계		5		24	24	-	-	24	24	-	-	24	24	-	-
1장. 환자안전 보장활동		1.1.	정확한 환자 확인	5	5	-	-	5	5	-	-	5	5	-	-
		1.2.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5	5	-	-	5	5	-	-	5	5	-	-
		1.3.	수술/시술의 정확한 수행	6	6	-	-	6	6	-	-	6	6	-	-
		1.4.	낙상 예방활동	5	5	-	-	5	5	-	-	5	5	-	-
		1.5.	손위생 수행	3	3	-	-	3	3	-	-	3	3	-	-
II 환자진료체계		46		261	-	260	1	261	-	260	1	258	-	251	7
2장. 진료전달 체계와 평가	진료 전달 체계	2.1.	외래 및 응급환자 등록 절차	4	-	4	-	4	-	4	-	4	-	4	-
		2.2.	입원 절차	4	-	4	-	4	-	4	-	4	-	4	-
		2.3.	중환자실/특수치료실 입실 절차	6	-	6	-	6	-	6	-	6	-	6	-
		2.4.	환자진료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	6	-	5	1	6	-	5	1	5	-	5	-
		2.5.	퇴원 및 전원 절차	6	-	6	-	6	-	6	-	6	-	6	-
	환자 평가	2.6.	외래환자 초기평가	4	-	4	-	4	-	4	-	4	-	4	-
		2.7.	입원환자 초기평가/재평가	8	-	8	-	8	-	8	-	8	-	8	-
		2.8.	응급환자 초기평가	5	-	5	-	5	-	5	-	5	-	5	-
	검사 체계	2.9.	검체검사 운영과정 관리	8	-	8	-	8	-	8	-	8	-	8	-
		2.10.	검체검사 결과 보고 절차	5	-	5	-	5	-	5	-	5	-	5	-
		2.11.	검체검사실 안전관리 절차	5	-	5	-	5	-	5	-	5	-	5	-
		2.12.	혈액제제 관리	6	-	6	-	6	-	6	-	6	-	6	-
		2.13.	영상검사 운영과정 관리	8	-	8	-	8	-	8	-	8	-	8	-
		2.14.	영상검사 결과 보고 절차	4	-	4	-	4	-	4	-	4	-	4	-
		2.15.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	6	-	6	-	6	-	6	-	6	-	6	-
3장. 환자진료	환자 진료 체계	3.1.	입원환자 치료계획	7	-	7	-	7	-	7	-	7	-	7	-
		3.2.	협진진료체계	3	-	3	-	3	-	3	-	3	-	3	-
		3.3.	통증관리	5	-	5	-	5	-	5	-	5	-	5	-
		3.4.	영양관리	5	-	5	-	5	-	5	-	5	-	5	-
		3.5.	영양집중지원서비스	5	-	5	-	5	-	5	-	5	-	2	3
		3.6.	욕창관리	5	-	5	-	5	-	5	-	5	-	5	-
		3.7.	호스피스·완화의료	4	-	4	-	4	-	4	-	4	-	4	-
	고위험 환자 진료 체계	3.8.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6	-	6	-	6	-	6	-	6	-	6	-
		3.9.	심폐소생술 관리	4	-	4	-	4	-	4	-	4	-	4	-
		3.10.	수혈환자 관리	4	-	4	-	4	-	4	-	4	-	4	-
		3.11.	항암화학요법	8	-	8	-	8	-	8	-	8	-	8	-
		3.12.	신체보호대 및 격리·강박	4	-	4	-	4	-	4	-	4	-	4	-
4장. 의약품관리		4.1.	의약품관리체계	5	-	5	-	5	-	5	-	3	-	3	-
		4.2.	의약품 구매선정	4	-	4	-	4	-	4	-	4	-	4	-
		4.3.	의약품 보관	8	-	8	-	8	-	8	-	8	-	8	-
		4.4.	처방 및 조제	10	-	10	-	10	-	10	-	10	-	10	-
		4.5.	의약품 투여 및 모니터링	7	-	7	-	7	-	7	-	7	-	7	-
		4.6.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4	-	4	-	4	-	4	-	4	-	-	4
5장.		5.1.	수술 계획	5	-	5	-	5	-	5	-	5	-	5	-

장(Chapter)	기준(Standard)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계	필수	정규	사범	계	필수	정규	사범	계	필수	정규	사범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5.2. 수술 중 환자안전 보장	5	-	5	-	5	-	5	-	5	-	5	-
	5.3. 시술 계획, 시술 중 환자안전 보장	8	-	8	-	8	-	8	-	8	-	8	-
	5.4. 진정치료	6	-	6	-	6	-	6	-	6	-	6	-
	5.5. 마취진료	8	-	8	-	8	-	8	-	8	-	8	-
	5.6. 수술장 안전관리	6	-	6	-	6	-	6	-	6	-	6	-
6장.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6.1. 환자권리 존중 및 안전보장	7	-	7	-	7	-	7	-	7	-	7	-
	6.2. 취약환자 권리보호	5	-	5	-	5	-	5	-	5	-	5	-
	6.3. 불만 및 고충 관리	5	-	5	-	5	-	5	-	5	-	5	-
	6.4. 의료사회복지체계	4	-	4	-	4	-	4	-	4	-	4	-
	6.5. 동의서	6	-	6	-	6	-	6	-	6	-	6	-
	6.6. 임상연구관리	8	-	8	-	8	-	8	-	8	-	8	-
	6.7. 장기이식관리	5	-	5	-	5	-	5	-	5	-	5	-
Ⅲ 조직관리체계	37	208	29	177	2	208	28	173	7	205	28	148	29
7장.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	7.1.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운영체계	5	5	-	-	5	5	-	-	5	5	-	-
	7.2. 위험관리체계	6	-	6	-	6	-	6	-	6	-	-	6
	7.3. 환자안전사고 관리	7	5	2	-	7	5	2	-	7	5	1	1
	7.4. 질 향상 활동	5	-	5	-	5	-	5	-	5	-	5	-
	7.5.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관리	4	-	4	-	4	-	4	-	4	-	2	2
8장. 감염관리	8.1. 감염예방.관리체계	4	3	1	-	4	3	1	-	4	3	1	-
	8.2. 감염감시 및 개선활동	5	-	5	-	5	-	5	-	5	-	5	-
	8.3. 감염예방.관리 교육	4	1	3	-	4	1	3	-	4	1	3	-
	8.4. 의료기구 감염관리	4	-	4	-	4	-	4	-	4	-	4	-
	8.5. 세척.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	7	-	7	-	7	-	7	-	7	-	7	-
	8.6. 환자치료영역 환경관리	3	-	3	-	3	-	3	-	3	-	3	-
	8.7. 급식서비스 관리	5	-	5	-	5	-	5	-	5	-	5	-
	8.8. 감염성질환 및 면역저하 환자관리	8	-	8	-	8	-	8	-	8	-	7	1
	8.9.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5	-	5	-	5	-	5	-	3	-	-	3
9장. 경영 및 조직운영	9.1. 합리적인 의사결정	9	-	9	-	9	-	9	-	9	-	7	2
	9.2. 의료기관 운영방침	4	-	4	-	4	-	4	-	4	-	4	-
	9.3. 부서운영	4	-	4	-	4	-	4	-	4	-	-	4
	9.4. 윤리위원회 운영	2	-	2	-	2	-	2	-	2	-	2	-
10장. 인적자원관리	10.1. 인사관리체계	6	-	6	-	6	-	6	-	6	-	6	-
	10.2. 의사(전문요)의 진료권한 승인과 평가	5	-	5	-	5	-	-	5	5	-	-	5
	10.3. 전문의를 제외한 직원의 직무확인과 평가	5	-	5	-	5	-	5	-	5	-	5	-
	10.4. 인사정보 관리	4	-	4	-	4	-	4	-	4	-	4	-
	10.5. 직원교육	7	-	6	1	7	-	6	1	7	-	6	1
	10.6. 보건의료인력 법적기준	6	-	6	-	6	-	6	-	6	-	6	-
	10.7. 직원안전 관리활동	6	6	-	-	6	6	-	-	6	6	-	-
	10.8. 폭력 예방 및 관리	3	-	3	-	3	-	3	-	3	-	3	-
11장. 시설 및 환경관리	11.1. 시설 및 환경안전 관리	9	-	9	-	9	-	9	-	9	-	8	1
	11.2. 설비시스템 관리	5	-	5	-	5	-	5	-	5	-	5	-

장(Chapter)	기준(Standard)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계	필수	정규	사범	계	필수	정규	사범	계	필수	정규	사범
	11.3. 위험물질 관리	5	-	4	1	5	-	4	1	4	-	4	-
	11.4. 보안 관리	5	1	4	-	5	-	5	-	5	-	5	-
	11.5. 의료기기 관리	9	-	9	-	9	-	9	-	9	-	7	2
	11.6. 화재안전 관리 활동	8	8	-	-	8	8	-	-	8	8	-	-
	11.7. 재난관리체계	3	-	3	-	3	-	3	-	3	-	2	1
12장.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12.1.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	9	-	9	-	9	-	9	-	9	-	9	-
	12.2.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11	-	11	-	11	-	11	-	11	-	11	-
	12.3. 의료정보수집 및 활용	5	-	5	-	5	-	5	-	5	-	5	-
	12.4.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6	-	6	-	6	-	6	-	6	-	6	-
IV. 성과관리체계	4	30	-	30	-	30	-	29	1	30	-	16	14
13장. 성과관리	13.1. 지표 관리	4	-	4	-	4	-	4	-	4	-	4	-
	13.2. 환자안전영역 지표 관리	5	-	5	-	5	-	5	-	5	-	5	-
	13.3. 진료영역 지표 관리	15	-	15	-	15	-	14	1	15	-	6	9
	13.4. 의료기관 관리영역 지표 관리	6	-	6	-	6	-	6	-	6	-	1	5